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93호 2025. 2. 19.(수)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335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예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업소 기준 완화(안 제3조)

○ 예천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삭제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nowflowers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지역경제과(전화: 054-650-60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
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예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 조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업소 기준 완화(안 제3조)
 - 예천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삭제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의뢰 예정
- 마. 입법예고 : 2월 중 입법예고 실시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사. 성별영향평가 :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 의뢰 예정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표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 ② 1.2. (생 략) 3. 예천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생 략)	제3조(상표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 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 ⑤ 생략